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규정

제정: 2022 년 5 월 14 일

개정: 2024 년 4 월 13 일

개정: 2025 년 5 월 2 일

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장질환 분야에서 대한장연구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발전시키고 장질환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회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사업의 명칭은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라 한다. 단, 대한장연구학회 이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 특정 목적을 적시하고 연구비를 지원 또는 기부한 경우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세부 명칭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조 (재 원)

본 사업은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지원비, 그 외의 학술지원기금 및 기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 (사업내용)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장질환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 2) 장질환 관련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3) 장질환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1. 본 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정하고, 학회 임원위원회에서 위촉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상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간사는 연구위원장이 겸임한다.
3. 운영위원회는 최소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학술연구지원사업계획은 학회 임원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 2장 연구비 지원

제 6조 (지원대상자 자격)

본 사업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대한장연구학회지 Intestinal Research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로 제한하며 학술적 공헌도가 높은 연구 계획이 있어야 한다. (단, 신진연구비는 예외적으로 최근 5년 이내 Intestinal Research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논문이 없다면, 수혜한 연구 종료 후 1년 내 Intestinal Research에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편을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e-publication 포함, 연구비 수혜 내용과 관련 없는 논문도 가능]).

책임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지원하는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과제로 대한장연구학회 이외의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은 사전고지해야 한다). 기 수혜자는 연구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다기관연구는 예외로 한다. 책임연구자가 기존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제7조 (지원대상 연구과제)

1. 장질한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2. 여러 연구자 혹은 여러 기관의 협력이 요구되는 연구과제
3.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4.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등을 우선 지원한다.

주) 동일 내용의 연구과제로 대한장연구학회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과제는 사전고지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0만원 미만의 연구비는 신청 가능함.

제8조 (연구비 지원)

1. 연구기간: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중개연구는 2년 이내로 한다.
2. 지원금액: 단일기관 단독연구; 최대 2,000만원, 다기관 공동연구; 최대 2,000만원, 중개연구; 최대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재원 규모와 연구계획 범위에 따라 연구 지원금액과 연구지원과제 수는 해당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지원단위: 단독 혹은 공동연구 모두 가능하다. 신진연구비의 경우 학회 평생 회원 중 3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만 45세 미만인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장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

제9조 (공 모)

본 사업에서 지원할 연구과제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이 사실을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연구과제 공모 시 당해년도 지원 대상 과제 및 지원범위를 명시한다. 학회는 특정 주제를 정한 별도의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기한 및 접수)

본 연구 계획서의 제출은 대한장연구학회 사무실로 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과제로 한다.

제11조 (신청절차)

연구비 신청은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연구비 신청에 있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소정양식)
2. 추천서 (대한장연구학회 평의원 1명)
3. 이력서 (사진)
4.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목록
5. 연구계획서
 - 1) 연구의 필요성 (개요, 연구동향, 중요성)
 - 2) 연구 목표
 - 3) 연구 목표의 창의성·도전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4) 연구 내용 및 방법
 - 5) 연구 수행 계획
 -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7) 연구비 사용 계획서
6. 서약서 (소정양식)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

제12조 (심사위원회)

1. 연구비 지원 심사는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회장, 부회장 2인, 연구위원장 및 회장이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13조 (심사기준)

1. 연구의 필요성: 제7조의 응모과제 선정 기준 참조
2. 연구의 독창성 및 우수성
3. 연구의 실현 가능성
4. 연구비의 적정성
5. 심사 시 가산점

: 최근 3년내 Intestinal Research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1편당 증례 0.3점, 종설 1점, 원저 1.5점씩 최종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제다기관공동연구는 최종 점수에 5점 가산

점을 부여한다.

: 책임연구자가 SCI(E) 저널에 주저자로 출판한 논문에 최근 2년 이내 게재된 Intestinal Research의 논문을 인용한 경우 횟수에 따라 상대평가로 최고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6.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제 4장 연구비 지급

제14조 (연구비 과제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와 연구자는 대한장연구학회 정기총회 회의록과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 (연구비 지급)

학회는 책임연구자에게 연구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 5장 연구과제 관리

제16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1.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1년 간격으로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단, 연구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제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구 종료 후 '최종 결과 보고서'만 제출한다. 책임연구자는 연구 기간을 1년 연장할 경우 1년 간격으로 중간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 지속, 연구비 조정, 연구계획 수정 또는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공지한다.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대한장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결과 논문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Intestinal Research 또는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3. 수혜자가 본 규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

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4.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별첨: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 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사사 표기 양식)

1. 국문: 이 연구는 ○○○○년도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2.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for 20○○ (20○○-○)."

부 칙

제19조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 평의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평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